

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

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 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2025년 8월 8일 9시 30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22층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.

발행주식 총수:	6,540,000주
주주의 총수:	1명
의결권 있는 주주 총수	1명
출석 주주의 수:	1명
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수:	6,540,000주
의결권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:	6,540,000주

의장인 대표이사 박천웅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의사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의장은 다음의 의안을 상정하고 주주에게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상호 변경의 건

의장은 본 의안을 상정하고 [첨부 1]과 같이 회사 상호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 후, 상호 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, 출석 주주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,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의장은 본 의안을 상정하고 [첨부 2]와 같이 회사 정관을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 후, 정관 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, 출석 주주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, 가결하다.

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안 전부를 심의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(폐회시각: 10:00)

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.

- 첨부: 1. 상호 변경안
2. 정관 변경안

2025년 8월 8일

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

의장, 대표이사

박 천 응



기타비상무이사

서 재 균

(인) 

기타비상무이사

한 정 훈

(인) 



[첨부 1] 상호 변경안

개정 전	개정 후	검토의견
제1조 (상호) 이 회사의 상호는 이스트 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라 하며 (이하 '회사' 라 한다) 영문으로는 Eastspring Asset Management Korea Co. Ltd. 라 한다.	제1조 (상호) 이 회사의 상호는 카디안 자산운용 주식회사라 하며(이하 '회사' 라 한다) 영문으로는 Kardian Asset Management Co., Ltd. 라 한다.	- 상호 변경



[첨부 2] 정관 변경안

개정 전	개정 후	검토의견
제1조 (상호) 이 회사의 상호는 이스트 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라 하며 (이하 '회사' 라 한다) 영문으로는 Eastspring Asset Management Korea Co. Ltd. 라 한다.	제1조 (상호) 이 회사의 상호는 카디안 자산운용 주식회사라 하며(이하 '회사' 라 한다) 영문으로는 Kardian Asset Management Co., Ltd. 라 한다.	- 상호 변경
제4조(공고방법)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제4조(공고) 회사의 공고는 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kardian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크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- 상법에서 전자공고가 허용 - 매일경제신문 공고 생략으로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
제11조 (주식매수선택권) ① (생략) ②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,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	제11조 (주식매수선택권) ① (생략) ②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,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	- 제44조에서 감사위원회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면서(이하 “본건 개정”이라 합니다)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
1. (생략) 2. 이사,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. (생략) ④ 내지 ⑦ (생략)	1. (생략) 2. 이사, 감사,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. (생략) ④ 내지 ⑦ (생략)	- 표제는 구속력이 없어 개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, 이하의 개정사항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.
제5장 이사 및 이사회	제5장 임원 및 이사회 	- 제44조와 연동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수정하였습니 다.
제31조 (이사의 수 및 구분)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31조 (이사와 감사의 수 등)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,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. ② (생략)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제32조 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	제32조 (이사와 감사의 선임)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	

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의 경우 선임 시 의결권 행사 의 제한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른다. ③ (생략)	- 다만, 감사의 경우 법률상 의결권 제한이 있으므로 제44조 제6항을 참고하여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을 명시하였습니다.
제33조 (이사의 임기) 상임이사,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사외이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 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 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	제33조 (이사와 감사의 임기) ① 상임이 사,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 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.	- 상법 제410조에 따라 감사의 임기 는 “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” 로 정해져 있으며, 이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(울산지방 법원 2003. 11. 19. 선고 2003가합 1485 판결). - 이러한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금융 사지배구조법령이 달리 정하고 있 지도 않습니다. - 따라서,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감사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.
제34조 (이사의 보선) ① 이사 중 결원 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	제34조 (임원의 보선) ① 이사 또는 감 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 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

선한다. 다만,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이를 보선한다. 다만,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보선으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제37조 (이사의 보고의무 등) ① (생략)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37조 (이사의 보고의무 등) ① (생략)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(제44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제38조 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 ① 내지 ② (생략)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의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	제38조 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 ① 내지 ② (생략)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개최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다만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	- 상법 제390조 제3항,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시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고,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- 이때, 정관으로 ‘통지기간’은 단축할 수 있지만(귀사의 경우 3일로 단축), 감사에 대한 통지 없이 이사에 대한 통지만으로 소집하거나, 감사의 동의가 없음에도 이사의 동의만으로

		로 소집결차를 생략하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. - 이상의 상법 규정에 맞추어 일부 문언을 수정했습니다.
제41조 (이사의 보수)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	제41조 (임원의 보수) 이사와 감사(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)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	- 상법 제415조, 제388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. -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, 그 감사는 이사가 아니므로 감사의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.
제44조 (감사위원회)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. ② 내지 ⑥ (생략) ⑦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 ⑧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한다.	제44조 (감사위원회)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. ② 내지 ⑥ (생략) ⑦ <삭제> [제45조 제6항으로 이동] ⑧ <삭제> [제45조 제7항으로 이동] ⑨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.	- 제44조의 제7항 내지 제9항(전문가 조력, 지원부서 설치)을 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하면서, 체계상 제44조에서 제45조로 이동시켰습니다. - 마찬가지로 이유로, 제45조 제5항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개정 부분은 제45조에서 제44조로 이동시켰습니다.

⑨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.	⑩ 감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(Audit Committee Terms of Reference)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 [제45조 제5항에 서 이동]	
제45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⑤ 감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등과	제45조 (감사의 직무) ① 감사(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)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⑤ <삭제> [제44조 제10항으로 이동]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 - 조문 이동 관련하여서는 제44조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(Audit Committee Terms of Reference)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	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 [제44조 제7항에서 이동] ⑦ 회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를 설치한다. [제44조 제8항에서 이동]	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제46조 (감사위원회의 보고의무 등)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	제46조 (감사의 보고의무 등) ① 감사(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)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제47조 (감사특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	제47조 (감사특) 감사(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)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

기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	하야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(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을 말한다)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	정하였습니다.
제50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· 비치 등)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 내지 3. (생략)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내지 ④ (생략)	제50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· 비치 등)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(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 내지 3. (생략)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내지 ④ (생략)	- 본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 없이 감사만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